

공 보

제501호 2015. 9. 23. (수)

선	기관의 장
결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260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3
거창군 조례 제2261호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12
거창군 조례 제2262호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6
거창군 조례 제226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3
거창군 조례 제2264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거창군 조례 제2265호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37
거창군 조례 제2266호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42
거창군 조례 제2267호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거창군 조례 제2268호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	54
거창군 조례 제2269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거창군 조례 제2270호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	60
거창군 조례 제2271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67
거창군 조례 제2272호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72
거창군 조례 제2273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76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18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2
 거창군 규칙 제1188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4

훈 령

거창군 훈령 제387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
 91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124호 2015년도 거창군 수렵장 설정 정정 고시 9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5-814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8
 거창군 공고 제2015-822호 거창군관리계획 【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 열람
 공고(안) 103
 거창군 공고 제2015-824호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06
 거창군 공고 제2015-825호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
 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10
 거창군 공고 제2015-828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114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5-21호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입법예고 115

회 람									
--------	--	--	--	--	--	--	--	--	--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60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의료급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공동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군수는 각 읍·면사무소에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 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 ⑦ 군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직원) ①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

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52
----------	-----------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15.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현행 :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 개정 :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나. 사회보장 명칭변경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상근간사 → 직원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규정(안 제5조)
-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제7조

나. 예산조치 : '16년 예산 2천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7. 10. ~ 7. 3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 성 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동 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61호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5 ~ 53
----------	-----------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법」(‘15. 7. 1.)이 개정·시행되어, 그동안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적인 위기사유 외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나. 예산조치 : ‘15년도 예산 271,838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개혁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7. 22. ~ 8. 1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배율(10%)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에 의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의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국비	218	240	264	288	320	1,330
	도비	27	30	33	36	40	166
	군비	27	30	33	36	40	166
	소계(a)	272	300	330	360	400	1,662
세입	국비	218	240	264	288	320	1,330
	도비	27	30	33	36	40	166
	군비	0	0	0	0	0	0
	소계(b)	245	270	297	324	360	1,496
총 비용(a-b)		27	30	33	36	40	166

3. 관련 의견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도모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절한지를 사후조사 및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노력.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동 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62호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제8조제2항 중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을 제4장으로 하며,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4조 및 제26조를 제21조 및 제23조로 하며, 제21조(기존의 제24조) 중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19조”로 하고, 제20조와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에 관한 심의 위원회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제22조(준용)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5.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5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군의 주민생활지원실장·행정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p>	<p>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2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4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② 지원센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지정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군수는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센터의 지리적 위치, 사업수행기관의 시설환경 및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방문교육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로 지정한다.</p>	<p><삭 제>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⑤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하고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통지 후 2주일 내에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21조(지정기간 및 지정취소) ①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운영위탁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p><삭 제></p>
<p>제22조(지원센터의 업무) 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p>	<p><삭 제></p>
<p>제23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지원센터가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5장 보칙</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25조(민간과의 협력)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장-----</p> <p>제2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에 관한 심의 위원회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p> <p>제21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 ----- -----제13조 부터 제19조-----</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22조(준용)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제23조(시행규칙) ----- -----</p>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54
----------	-----------

제출년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p>1. 제안이유</p> <p>○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8조)</p> <p>○ 기 능 : “심의” ⇒ “<u>협의·조정</u>”</p> <p>-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내실화에 관한 사항 등</p> <p>○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u>부군수</u>”</p> <p>위 원 :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군수가 위촉한 사람</p> <p>○ 위원장 직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p> <p>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장)</p> <p>○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함</p> <p>3. 참고사항</p> <p>가.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제6조</p> <p>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p> <p>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p> <p>라. 기타사항</p> <p>(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p> <p>(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p> <p>(3) 입법예고</p> <p>(가) 예고기간 : 2015. 7. 22. ~ 8. 11.</p> <p>(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p> <p>(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p> <p>(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p>
--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6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668명”을 “6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54명”을
“65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68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54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u>670명</u>-----</p> <p>-----</p> <p>1. -----<u>656명</u></p> <p>2. -----</p>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0 668	293 291	14	128	65	63	51	37	147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37 635	290 288	14	100	37	63	49	37	147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98 596	276 274	11	94	33	61	45	36	136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6	1		3	3		2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55
----------	-----------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668명 ⇒ 670명(증 2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2명

- 현행 : 596명(본청274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5명, 읍36명, 면136명)

- 조정 : 598명(본청276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5명, 읍36명, 면13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연 68,000천원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6. 12. ~ 15. 7. 0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 관련조문 : 제2조(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국비							
	군비		68	70	72	75	78	363
	소계(a)		68	70	72	75	78	363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68	70	72	75	78	363

3. 관련 의견

- 재난안전 조직강화를 위한 인력증가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증원 내역 : 7급 1명, 8급 1명
- 연간 인건비 증가액 : 68,000천원
 - 기본급 40,000천원, 수당 등 28,000천원

작성자 : 행정과장 이환철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64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조면 석강리와 도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리명칭	구역
가조면	석강리	종래 석강리 일원, 종래 기리 일원 중 394~408, 409-1, 410-1, 411-1, 524-1, 526-1, 527-2, 528-7, 529-4, 530-1, 531-1, 532-4번지 및 종래 석강리 일원 중 919-1, 919-3, 920-1, 921-1, 922~927, 928-2, 928-3, 929-1, 931-1, 932, 933-2, 933-4, 935-1, 1025, 1026, 1209, 1209-6, 1210, 1211, 1212, 1224-1, 1224-3, 1230~1240, 1242~1259, 1261~1263-3, 1264~1265-1, 1355-8~1355-11, 1356-1, 1356-4, 1356-5, 1357-4, 1378-1, 1378-2, 1378-48~1378-50, 1378-54, 1390~1392-1을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도리 일원 중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
	도리	종래 도리 일원 중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번지를 제외한 지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제2조 관련)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거 창 읍	상 립 리	종래 상동 일원, 종래 송정리 일원 중 225-2, 1059-2~1059-35번지 및 종래 가지리 일원 중 1333, 1337-1번지
	중 앙 리	종래 하동 일원
	대 동 리	종래 동동 일원
	대 평 리	종래 중동 일원 중 대평리 1303-1, 1303-2, 1303-3, 1303-5, 1304-8, 1463-10, 1473-15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김천리 일원 중 46, 47-2번지
	김 천 리	종래 김천동 일원 중 김천리 46, 47-2번지를 제외한 지역, 종래 대평리 일원 중 1303-1, 1303-2, 1303-3, 1303-5, 1304-8, 1463-10, 1473-15번지
	송 정 리	종래 송정리 일원 중 산107~산109, 산110-1, 산118, 산119-5, 산120, 산121, 산122, 산144, 1004~1047, 1085~1087, 225-2, 1059-2~1059-35번지를 제외한 지역
	정 장 리	종래 정장리 일원 및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6~1638, 1642-1~1642-7, 1647-2번지
	장 팔 리	종래 장팔리 일원 중 406-1~406-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4, 1635번지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거 창 읍	서 변 리	종래 서변리 일원 중 1147-55~1147-60, 1147-62, 1147-63, 1147-69~1147-82, 1147-84~1147-96, 1147-99~1147-102, 1147-104, 1147-114, 1147-116~1147-122, 464-1~464-3, 464-5, 464-6, 465-1, 480-1, 481-1~481-4, 482-1, 482-2, 482-4, 482-6, 482-7, 483, 483-1, 483-2, 483-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학리 1047-4, 1047 -31번지와 종래 양평리 1239-69번지
	동 변 리	종래 동변리 일원
	학 리	종래 학리 일원 중 1047-4, 1047-31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서변리 일원 중 1147-55~1147-60, 1147-62, 1147-63, 1147-69~1147-78, 1147-82, 1147-84~1147-94, 1147-99, 1147-102, 1147-104, 1147-114, 1147-116~1147-122, 464-1~464-3, 464-5, 464-6, 465-1, 480-1, 481-1~481-4, 482-1, 482-2, 482-4, 482-6, 482-7, 483, 483-1, 483-2, 483-4번지
	양 평 리	종래 양평리 1239-69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서변리 1147-79~1147-81, 1147-95, 1147-96, 1147-100, 1147-101번지
	가 지 리	종래 가지리 일원 중 1333, 1333-7번지를 제외한 지역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주 상 면	도 평 리	종래 도평리 일원
	연 교 리	종래 연교리 일원
	내 오 리	종래 내오리 일원
	완 대 리	종래 완대리 일원 및 종래 농산리 일원 중 1939~1950번지
	성 기 리	종래 성기리 일원
	거 기 리	종래 거기리 일원
	남 산 리	종래 남산리 일원
웅 양 면	동 호 리	종래 동호리 일원
	죽 립 리	종래 죽림리 일원
	노 현 리	종래 노현리 일원
	산 포 리	종래 산포리 일원
	군 암 리	종래 군암리 일원
	신 촌 리	종래 신촌리 일원
	한 기 리	종래 한기리 일원
고 제 면	농 산 리	종래 농산리 일원 중 1939~1950번지를 제외한 지역
	개 명 리	종래 개명리 일원
	봉 산 리	종래 봉산리 일원
	봉 계 리	종래 봉계리 일원
	궁 향 리	종래 궁향리 일원
북 상 면	갈 계 리	종래 갈계리 일원
	소 정 리	종래 소정리 일원
	농 산 리	종래 농산리 일원
	병 곡 리	종래 병곡리 일원
	산 수 리	종래 산수리 일원
	월 성 리	종래 월성리 일원
	창 선 리	종래 창선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위 천 면	장 기 리	종래 장기리 일원
	남 산 리	종래 남산리 일원
	상 천 리	종래 상천리 일원
	강 천 리	종래 강천리 일원
	황 산 리	종래 황산리 일원
	당 산 리	종래 당산리 일원 및 종래 율리 일원 중 578, 579, 654, 655, 663-1, 663-3, 664번지
	모 동 리	종래 모동리 일원
마 리 면	영 승 리	종래 영승리 일원
	율 리	종래 율리 일원 중 578, 579, 654, 655, 663-1, 663-3, 664번지를 제외한 지역
	월 계 리	종래 월계리 일원
	말 흘 리	종래 말흘리 일원
	고 학 리	종래 고향리 일원
	대 동 리	종래 대동리 일원
	하 고 리	종래 하고리 일원 및 종래 송정리 일원 중 산107~109, 산110-1, 산118, 산119-5, 산120, 산121, 산122, 산144, 산1004 ~ 산1047, 1085~1087번지
남 상 면	춘 전 리	종래 함양군 안의면 춘전리 일원
	진 목 리	종래 함양군 안의면 진목리 일원
	둔 동 리	종래 둔동리 일원
	오 계 리	종래 오계리 일원
	무 촌 리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4~1638, 1642-1~1642-7, 1647-2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장팔리 일원 중 406-1~406-4번지
	송 변 리	종래 송변리 일원
	대 산 리	종래 대산리 일원 및 종래 월평리 214, 1328, 1373-2, 1348, 1372-1, 1373-1, 1594-6, 1594-7, 1598-2, 1598-4, 산6, 산45-14, 산45-15, 산45-18, 산45-19번지
	월 평 리	종래 월평리 일원 중 214, 1328, 1373-2, 1348, 1372-1, 1373-1, 1594-6, 1594-7, 1598-2, 1598-4, 산6, 산45-14, 산45-15, 산45-18, 산45-19번지를 제외한 지역
	전 척 리	종래 전척리 일원
	임 불 리	종래 임불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남 하 면	둔 마 리	종래 둔마리 일원
	양 향 리	종래 양향리 일원
	무 룡 리	종래 무룡리 일원
	대 야 리	종래 대야리 일원
	지 산 리	종래 지산리 일원
신 원 면	수 원 리	종래 수원리 일원
	양 지 리	종래 양지리 일원
	구 사 리	종래 구사리 일원
	과 정 리	종래 과정리 일원
	덕 산 리	종래 덕산리 일원
	청 수 리	종래 청수리 일원
	중 유 리	종래 중유리 일원
	대 현 리	종래 대현리 일원
	와 룡 리	종래 와룡리 일원
가 조 면	석 강 리	<p>종래 석강리 일원, 종래 기리 일원 중 394~408, 409-1, 410-1, 411-1, 524-1, 526-1, 527-2, 528-7, 529-4, 530-1, 531-1, 532-4번지 및 종래 석강리 일원 중 919-1, 919-3, 920-1, 921-1, 922~927, 928-2, 928-3, 929-1, 931-1, 932, 933-2, 933-4, 935-1, 1025, 1026, 1209, 1209-6, 1210, 1211, 1212, 1224-1, 1224-3, 1230~1240, 1242~1259, 1261~1263-3, 1264~1265-1, 1355-8~1355-11, 1356-1, 1356-4, 1356-5, 1357-4, 1378-1, 1378-2, 1378-48~1378-50, 1378-54, 1390~1392-1을 제외한 지역 및 <u>종래 도리 일원 중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u></p>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가 조 면	기 리	종래 기리 일원 중 394~408, 409-1, 410-1, 411-1, 524-1, 526-1, 527-2, 528-7, 529-4, 530-1, 531-1, 532-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동례리 일원 중 1739-3번지
	대 초 리	종래 대초리 일원 중 1~5-3, 6-1~6-3, 7-1~7-3, 8-1, 8-2, 9-1~11-2, 14, 15, 16-2~16-4, 17-1, 18-1~24-2, 24-5, 25-1, 25-3, 31, 32, 33-1, 83-1, 84-1, 85-1, 86-1, 88-3, 89-3, 90-3, 91-1, 92-1, 92-2, 408-1, 408-2, 409-3, 409-5, 409-11, 699-91, 699-92, 699-127, 699-128, 699-165~699-167, 699-182, 700, 701-2, 701-4, 701-6, 701-7, 701-8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대초리 일원 중 649-4, 649-14, 654-11, 699-133, 699-134, 699-136~699-141, 699-143, 699-144, 699-181, 699-193, 699-194번지를 제외한 지역
	동 례 리	종래 동례리 일원 중 1739-3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대초리 일원 중 649-4, 649-14, 654-11, 699-133, 699-134, 699-136~699-141, 699-143, 699-144, 699-181, 699-193, 699-194번지
	장 기 리	종래 장기리 일원 중 715-1~715-12, 719-1~719-12, 724, 725, 727-3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용산리 일원 중 627-1~627-12, 628-1~628-7, 641, 647, 648, 649, 671-1번지
	사 병 리	종래 사병리 일원
	마 상 리	종래 마상리 일원
	수 월 리	종래 수월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가 조 면	일 부 리	종래 일부리 일원, 종래 석강리 일원 중 919-1, 919-3, 920-1, 921-1, 922~927, 928-2, 928-3, 929-1, 931-1, 932, 933-2, 933-4, 935-1, 1025, 1026, 1209, 1209-6, 1210, 1211, 1212, 1224-1, 1224-3, 1230~1240, 1242~1259, 1261~1263-3, 1264~1265-1, 1355-8~1355-11, 1356-1, 1356-4, 1356-5, 1357-4, 1378-1, 1378-2, 1378-48~1378-50, 1378-54, 1390~1392-1 및 종래 대초리 일원 중 1~5-3, 6-1~6-3, 7-1~7-3, 8-1, 8-2, 9-1~11-2, 14, 15, 16-2~16-4, 17-1, 18-1~24-2, 24-5, 25-1, 25-3, 31, 32, 33-1, 83-1, 84-1, 85-1, 86-1, 88-3, 89-3, 90-3, 91-1, 92-1, 92-2, 408-1, 408-2, 409-3, 409-5, 409-11, 699-91, 699-92, 699-127, 699-128, 699-165~699-167, 699-182, 700, 701-2, 701-4, 701-6, 701-7, 701-8번지
	도 리	종래 도리 일원 중 689, 695, 695-1, 696, 697, 698, 820, 산10, 산13-2, 산24-8번지를 제외한 지역
가 북 면	우 혜 리	종래 우혜리 일원
	박 암 리	종래 박암리 일원
	몽 석 리	종래 몽석리 일원
	용 암 리	종래 용암리 일원
	중 촌 리	종래 중촌리 일원
	해 평 리	종래 해평리 일원
	용 산 리	종래 용산리 일원 중 627-1~627-12, 628-1~628-7, 641, 647, 648, 649, 671-1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장기리 일원 중 715-1~715-12, 719-1~719-12, 724, 725, 727-3번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56
----------	-----------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현재 조성 중인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구역이 2개의 법정리(가조면 도리 일부와 석강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토지관리 및 행정재산관리 시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구역이 2개의 법정리(가조면 도리 일부와 석강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6. 19. ~ 7. 09.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65호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및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군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와 연합회로 한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구입비 등 소모성 운용비, 야식비, 출동비
2. 방범초소 유지 및 관리 비용
3.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율방범대와 대원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5 ~ 57
----------	-----------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 수행 지원
-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회의 용어의 뜻을 정함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회로 하고,
- 소모성 운용비, 야식비, 출동비, 방범초소 유지 및 관리 비용
-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예산 목적 외 사용 지도 및 감독
- 연중 활동 실적 평가 및 반영

라. 포상,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공적 포상
-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 교육 실시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및 별표 12
-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방법대 운영비 : 16개대 연간 2,400천원 (총38,400천원) / 일반보상금
- 연합회 체육대회 : 4,000천원 / 민간행사 보조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6. 22. ~ 7. 1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방범 활동 추진에 따른 운영비, 장비 구입비 등 발생
- 관련조문 : 제6조(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국비					
	군비	42.4	52.4	62.4	42.4	42.4	242
	소계(a)	42.4	52.4	62.4	42.4	42.4	242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42.4	52.4	72.4	42.4	42.4	252

3. 관련 의견

- 원활한 자율방범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순찰활동 추진을 위해 비용 추가로 요구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매년

- 자율방범대 운영비 : 총38,400천원(16개대, 각 2,400천원)
- 연합회 체육대회 : 4,000천원

○ 장비구입비(2016년) : 10,000천원

- 무전기, 방범 초소 소요물품 구입 등

○ 방범복 구입비(2017년) : 15,000천원

※ 2013년 지원 : 15,000천원

작성자 : 행정과장 이환철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66호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5 ~ 26
----------	-----------

제출일자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 교육여건 개선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실태조사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 2,604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3. 13. ~ 4. 03.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결과 요약서 붙임)

○ 의견제출자 : 399(단체 6, 개인 393)

○ 의견 미반영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 여부
창남초등학교 학부모회 외 398	○ 무상급식비를 없애기 위해 졸속으로 만든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조례 반대 ○ 정부의 공식 업무절차를 밟지 않고 공공기관이 불법적 으로 신청 받음. ○ 지금 필요한 것은 무상급식	○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견제출한 무상급식 내용과는 다른 별개의 조례안으로 행정 절차법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임 ○ 제출의견은 조례안 내용과 무관하여 입법내용에 반영될 수 없음	미반영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체

- ① 세출 ----- 2,604백만원
- ◆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 : 1,200백만원
 - 서민자녀 및 소외계층(저소득 250% 이내)
: 연 500,000원 × 2,400명 = 1,200백만원
 - ◆ 서민자녀 자기주도 학습 캠프 운영 : 360백만원
 - 600,000원 × 600명 = 360백만원
 - ◆ 서민자녀 특기적성 교육 지원 : 310백만원
 - 1회/103,000원 × 50회 × 60명 = 310백만원
 - ◆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 : 224백만원
 - 1,600,000원 × 140명 = 224백만원
 - ◆ 진로 프로그램 운영 : 162백만원
 - 1인/245,000원 × 220명 × 3회 = 162백만원
 - ◆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지원 : 200백만원
 - 1개반/720,000원 × 70개반 × 4회 = 200백만원
 - ◆ 서민자녀 영어캠프 운영 : 147백만원
 - 600,000원 × 120명정도 × 2회 = 147백만원

나. 추계의 결과

구분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도비		1,302	1,302	1,302	1,302	1,302	6,510
	군비		1,302	1,302	1,302	1,302	1,302	6,510
	소계(a)		2,604	2,604	2,604	2,604	2,604	13,020
세입	도비		1,302	1,302	1,302	1,302	1,302	6,510
	군비		1,302	1,302	1,302	1,302	1,302	6,510
	소계(b)		2,604	2,604	2,604	2,604	2,604	13,020
총 비용(a-b)			-	-	-	-	-	-

3. 관련의견 : 없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세출			13,020	2,604	2,604	2,604	2,604	2,604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		1,200	1,200	1,200	1,200	1,200
		서민자녀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360	360	360	360	360
		서민자녀 특기적성 교육 지원		310	310	310	310	310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		225	225	225	225	225
		진로 프로그램 운영		162	162	162	162	162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지원		200	200	200	200	200
		서민자녀 영어캠프 운영		147	147	147	147	147

작성자 : 창조산업과장 이 상 준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재원조달	13,020	2,604	2,604	2,604	2,604	2,604
의존 재원	소 계	6,510	1,302	1,302	1,302	1,302
	도비	6,510	1,302	1,302	1,302	1,302
자체 수입	소 계	6,510	1,302	1,302	1,302	1,302
	지방세	6,510	1,302	1,302	1,302	1,30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관련 의견 : 없음

3. 협의사항 : 없음

4. 작 성 자 : 창조산업과장 이 상 준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 발전과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67호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기존의 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지정 하거나 변경”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로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변경”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산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산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산업보존구역의 <u>지정·변경</u> 사유 및 목적 3. ~ 4. (생략) <p>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산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산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2. <u>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u> <p>② ~ ⑤ (생략)</p>	<p>제11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② (생략)</p> <p>③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u> 2. <u>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u> <p>④ ----- -----<u>지정·변경 또는 취소</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u>지정·변경 또는 취소</u>----- 3. ~ 4. (현행과 같음) <p>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산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산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58
----------	-----------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안 제11조제3항)

나.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시 법령상 근거 없는 제출서류 삭제(안 제13조제1항)

○ 삭제 : 상생협력사업계획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삭제(안 제13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01. ~ 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68호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점용료의 납부)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조(점용료의 납부) ① ----- ----- ----- ----- -----</p> <p>② ----- ----- ----- -----</p> <p>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4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분을 되들려 줄 수 있다.</p> <p>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p> <p>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철회나 점용기간 단축을 군수에게 신청한 경우</p>	<p>제4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60
----------	-----------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점용료 부과 금액이 5,000원 미만인 소액 점용료를 미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혜택 제공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납부 후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부과를 해소

2. 주요내용

- 가. 5,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 점용료를 미부과하는 조항 신설
(안 제3조제3항)
- 나.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상위법률에 근거 없이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삭제(안 제4조)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8. 01. ~ 8. 2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69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한다.

1. 변경·해제의 근거
2.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일부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최초 가축사육시설 면적대비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

제6조제6항 중 “「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24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별표 1 전부제한구역 란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u>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u></p> <p>②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u>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할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세대주가 100분의 60 이상 동의한 경우(다만, 가축 사육시설의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구역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u> 6.~ 7. (생략)</p> <p>제6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 ⑤ (생략)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u>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를 준용한다.</p> <p>제7조(처리범위 등) ① (생략)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u>법 제24조</u>에 따라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 ----- <u>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한다.</u> <u>1. 변경·해제의 근거</u> <u>2.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u> <u>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일부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최초 가축사육시설 면적대비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u></p> <p>6.~ 7. (현행과 같음)</p> <p>제6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p> <p>제7조(처리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법 제25조</u>----- ----- 1. ~ 2. (현행과 같음)</p>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61
----------	-----------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조례 시행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3조제4항)

나.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의 증축 시 인근주민의 6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다. 인용 법 조문 및 조례명을 수정함(안 제6조, 제7조, 별표 1)

○ 「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법 제24조 ⇒ 법 제25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2조 ⇒ 제12조, 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삭제(안 제4조제2항제5호)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8. 01. ~ 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70호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하거나 채취·구매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가 식품가공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것
 - 나. 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구매·유통 또는 판매를 농가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감시와”를 “지도·감독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에”를 “「식품위생법」 또는 제7조에서 군수가 정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의 특례) 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p> <p>2. “농가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채취·구매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p> <p>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구매·유통 또는 판매하는 가공사업 농업인등을 말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p>	<p>제1조(목적) ----- ----- -----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36조-----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 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p> <p>2. “농가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하거나 채취·구매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p> <p>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가 식품가공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것 나. 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일 것</p> <p>4.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구매·유통 또는 판매를 농가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 ----- -----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하도록----- ② ----- ----- -----지도·감독과----- -----</p>

현행	개정안
<p>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생략) ②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생략)</p>	<p>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식품위생법」 또는 제7조에서 군수가----- -----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군민의 역할) ① 군수는 농가 식품 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단체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소비자단체회원으로 참여하여 농가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p>	<p>제5조(군민의 역할) ① <삭 제> ----- ----- -----</p>
<p>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등) 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별표]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7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오염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가.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62
----------	-----------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에 농업인들이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게 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식품가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용어의 뜻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농가 식품가공사업 중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하고 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나.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 조항 삭제(안 제7조)

○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완공에 맞춰 개별조례 제정

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특례 신설(안 제7조, 별표)

○ 건축물 위치, 구조, 작업장,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 특례 마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1호자목4)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등(안 제3조·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 제1호자목4))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민원봉사과(위생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완화(안 제7조, 별표)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8. 01. ~ 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71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조례시행규칙”을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규칙”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2호나목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을 “배수설비 설치 신
고를 할 때 배출수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을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영”을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영, 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p> <p>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p> <p>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p> <p>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경우</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p> <p>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p> <p>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p> <p>4.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p>	<p><삭 제></p>
<p>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4조(일시사용신고) ----- -----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공사시행) ① (생략) 1. (생략)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u>규칙</u>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 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3. (생략) ② ~ ⑤ (생략)</p>	<p>제11조(공사시행)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하수도법 시행규칙」 -----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사항 및 <u>규칙</u>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p>	<p>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수도법 시행규칙」 ----- ----- 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략)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u>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u>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u>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u> 3. (생략)</p>	<p>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 ----- 나. ----- ----- <u>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u> ----- 다. ----- ----- <u>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u> -----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② (생략)</p> <p>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운반 등에 관한 조치명령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p>	<p>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1. -----「하수도법 시행령」----- ----- 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모든----- ----- ③ (현행과 같음)</p>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63
----------	-----------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의무부과 및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나.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 삭제에 따른 일부 내용 수정(안 제17조제2호)

○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신고량

⇒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할 때 배출수량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안 제23조)

○ 제반 ⇒ 모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27조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삭제(안 제3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01. ~ 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72호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
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1. 도서관, 농업 박물관
2.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
3.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4. 비영업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공동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5 ~ 64
----------	-----------

제출일자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
- 주민공동이용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

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 도서관, 농업 박물관
-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
-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 비영업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 공동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되어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7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나. 예산조치 : '15년도 예산 1,571백만원 기 확보(건설과)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건설과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6. 15. ~ 7. 0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건축물 및 시설물 조성 등
-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제4조(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시설물.
 1. 도서관, 농업박물관 / 2.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
 3.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4. 비영업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 공동 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야 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세출	국비	477	625	1100	700	598	3,500
	도비	61	80	141	90	78	450
	군비	143	188	330	210	179	1,050
	소계(a)	681	893	1,571	1,000	855	5,000
세입	국비	477	625	1100	700	598	3,500
	도비	61	80	141	90	78	450
	소계(b)	538	705	1,241	790	676	3,950
총비용(a-b)		143	188	330	210	179	1,050

※ 건설과 권역단위정비사업에 예산 편성 및 집행

3. 관련 의견

-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제도 장치를 마련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경 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조례 제2273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본문 및 제1호·제2호·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기존의 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그린카드 이용자에게는”으로 “감면”을 “경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기존의 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이”를 “사용이 취소 또는”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p>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u>사람</u>----- ----- 1. ----- -----<u>사람</u>----- 2. ----- -----<u>사람</u>----- 3. -----<u>사람</u>-----</p>
<p>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16조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p>	<p>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u><신 설></u></p>	<p>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1. ----- 2. ----- 3. ----- 4. ----- ----- <u><삭 제></u></p> <p>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현 행	개 정 안
<p>② ~ ③ (생 략) ④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 ④ (현행 제2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⑤ ----- -----<u>경우와 그런</u> <u>카드 이용자에게는</u>-----<u>경감</u>-----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p>
<p>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u>사용이</u> 정지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4. ~ 5. (생 략) ② (생 략)</p>	<p>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 ----- ----- -----<u>반환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3. ----- -----<u>사용이 취소 또는</u>----- -----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p>	<p><삭 제></p>
<p>제24조(위탁의 취소) ① ~ ② (생 략)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제24조(위탁의 취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25조(준용) ① (생 략)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제25조(준용) (현행과 같음) <삭 제></p>

[별 표] 거창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체육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고
				평 일	공휴일	
스 포 츠 파 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종합운동장 (트랙)			무료	무료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	80,000	100,000	신설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신설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	체육경기		무료		신설
		소규모공연		무료		신설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50,000	120,000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70,000			
테니스장	회 원	월 사용료	7,000			
	비 회 원	일 사용료	4,000			
		월 사용료	20,000			
게이트볼장			무 료			
족구장			무 료			
궁도장			무 료			
농구장			무 료			
인라인스케이트장			무 료			
사격장			무 료			
파크골프장			무 료		신설	
그라운드골프장			무 료		신설	

※ 전기(조명포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5 ~ 59
----------	-----------

제출연월일	2015. 8. 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실버레포츠타운 시설 준공에 따른 각종 시설별 사용료 기준마련 및 군정시책반영과 상위법령 위반 등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항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기준 추가함(안 별표)

○ 다목적구장,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 골프장 신설함

나. 사용료 경감조항 추가함(안 제15조제2항·제4항)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주관행사 시 80퍼센트 경감
- 수영장 이용 월 회원 중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퍼센트 경감

다. 상위법령 위반 등 정비대상 조항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제24조제3항)

○ 사용허가 및 위탁 취소 시 손해배상 관련 규정 삭제

라.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조항 삭제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6. 10. ~ 2015. 6.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규칙 제118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5 ~ 38
----------	-----------

제출연월일	2015. 7. 06.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 7급 정원 증원 1명(안 별표)

○ 본청 7급 : 96명 → 97명(행정·방재안전 1명)

나. 일반직 8급 정원 증원 1명(안 별표)

○ 본청 8급 : 95명 → 96명(시설·방재안전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68,000천원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6. 12. ~ 15. 7. 0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규칙 제1188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p>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의한다.</p> <p>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17조(감면)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9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5. ~ 6. (생략) ② (생략) 	<p>제17조(감면)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4. ~ 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별지 제5호서식】 <삭 제>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처리기한 즉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 태		전화번호		
양 수 시 설	자 동 모 타 펌 프			그 밖 에		
	모타규격	HP		설치개소수	대	
	설치대수	대		규 격	m/m	
	관 구 경	m/m		양수능력	m ³ /H	
	양수능력	m ³ /H		그 밖 에		
상 수 도	용 도					
	사용기간	일 간	m ³	월 간	m ³	
	사 용 량					m ³ /H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 청 인 (인)</p> <p style="margin-top: 20px;">거 창 군 수 귀 하</p>						
<p>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p>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5 ~ 48
----------	-----------

제출연월일	2015. 8. 07.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의무부과 및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선하여 대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 삭제 및 정비(안 제9조, 제17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삭제(안 제9조)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01. ~ 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이홍기

2015년 9월 23일

거창군 훈령 제387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5 ~ 39
----------	-----------

제출연월일	2015. 7. 06.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안 별표)

- 안전총괄과(증원 2명) : 행정·방재안전 7급(증원 1명)
 시설·방재안전 8급(증원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68,000천원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고시 제2015-124호

[2015년도 거창군 수렵장 설정 정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거창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거창군수

수렵장 설정고시

■수렵기간

2015. 11. 20. ~ 2016. 2. 29.

※ 제외기간 : 2016.1.1.(신정), 2.6.~ 2.10.(설연휴)

■수렵장 개요

- 수렵장명칭 : 거창군 수렵장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승인인원 : 900명
- 총 면 적 : 804.08km²(80,408ha)
 - 수렵장 설정면적 : 686.61km²(68,661ha)
 - 수렵장 제외면적 : 117.47km²(11,747ha)

■수렵금지구역과 면적

-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16.1km²
- 공 원 구 역 : 56.4km²
- 군사시설보호구역 : 1.60km²
- 도 시 지 역 : 31.15km²
- 문화재보호구역 : 0.14km²
- 관 광 지 : 0.46km²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1.30km²
-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2.3km²
- 기타(축사, 인가 등) : 8.02km²
-

총기보관 장소 현황

관할지구대	소재지	전화번호(055)
아림지구대	거창읍 중앙리 1길 20-5	941-0112
원학파출소	위천면 원학길 360	943-0112
웅양파출소	웅양면 웅양로 1432	942-3112
가조파출소	가조면 가조가야로 1079	942-0112
남상파출소	남상면 수남로 1845	943-4112
신원파출소	신원면 신차로 3067	942-8112
고제파출소	고제면 입석2길 14	942-7112

- ※ 총기사용시간 : 일출 후부터 ~ 일몰 전까지
- 총기출고시간 : 06:00 (오전 6시) 이후
- 총기입고시간 : 22:00 (오후10시) 까지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현황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신고와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무소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1	거창군청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940-3490
2	거창읍사무소	거창 거창읍 거열로 90	940-7320
3	주상면사무소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940-7360
4	웅양면사무소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31	940-7410
5	고제면사무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940-7460
6	북상면사무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	940-7510
7	위천면사무소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	940-7560
8	마리면사무소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	940-7610
9	남상면사무소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	940-7660
10	남하면사무소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	940-7710
11	신원면사무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	940-7760
12	가조면사무소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940-7810
13	가북면사무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	940-7860

※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

수렵장 사용료 및 수렵동물 포획수량

■ 사용료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1인)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승인기준 (수렵면허 종별)		기간별		기간별	
				엽기내 (약100일)	수용 인원
1종 수렵면허	적색포획승인권		500천원		315명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멧돼지 고라니 조류 1종	4개(마리) 2개(마리) 20개(마리)		
1종,2종 수렵면허	청색포획승인권		200천원		585명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고라니 조류 1종	1개(마리) 35개(마리)		
수용인원 합계			900명		

* 조류1종 :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흰빵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 기타조수류 :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확인표지(Tag) 부착동물 :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오리류(5종)

※ 기타조수류는 확인표지(Tag)를 발급·부착하지 않음

※ 적색포획승인은 1종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 입금 개시일 : 2015. 10. 1.(목) 09:00부터
- 입금 마감일 : 2015. 10. 8.(목) 18:00까지

■ 포획승인 신청기간

- 신청 개시일 : 2015. 10. 1.(목) 09:00부터
- 신청 마감일 : 2015. 10. 8.(목) 20:00까지

※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5. 10. 8. 20:00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적색포획승인권 (50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179-9674-41 (315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거창군수렵장)

※ (500천원 단위로 입금된 금액만 유효함)

• 청색포획승인권 (20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179-9678-91 (585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거창군수렵장)

※ (200천원 단위로 입금된 금액만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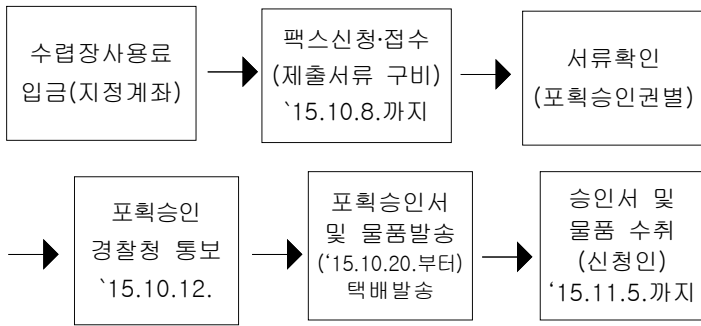
■ 포획승인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5. 10. 1.(목) 09:00부터
2015. 10. 8.(목) 20:00까지
-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른 조치사항 임)

- 제출서류: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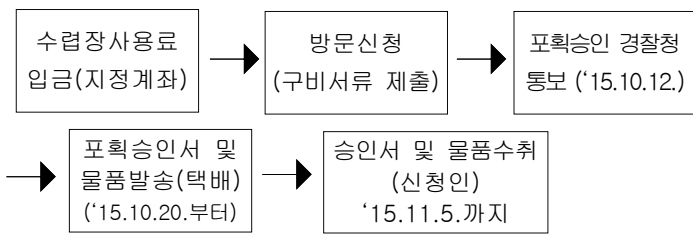
• 포획승인 처리절차

- ① 팩스(FAX) 접수 및 발급 절차



※ 포획승인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원본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② 방문접수 및 발급 절차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owaps.or.kr>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홈페이지)

● 접수처

- ① 팩스접수
 - 적색포획 승인신청서 : Fax) 055-733-3328
 - 청색포획 승인신청서 : Fax) 055-733-3329
- ② 연 락 처 : Tel) 055-759-2626 (대표번호)
- ③ 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

● 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서를 받은 사람에게 대한 명단을 2015. 10. 12.까지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에서 총기 운반을 직접 함으로 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복수(여러 곳)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거창군, 괴산군, 예천군의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3정의 총기소기허가 및 총기보관해제신청이 필요합니다.)

● 수렵장 내 총기보관 입고장소 정보는 수렵장 관할경찰서에서 통신문자(SMS) 및 우편으로 일괄 통보합니다. (수렵장내 관할경찰서 문의)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경찰청 공고 2015-10, 2015.5.4.)에 따라 “수렵장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위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 조치사항의 상세 내용은 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1362) 또는 관할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Tag)에 포획일자, 장소 등 기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확인표지(Tag)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는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기보관 해제 및 운송 등 경찰청 조치사항

-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수렵장 총기보관소로 경찰청이 직접 운송합니다.
- 수렵총기는 수렵장마다 1정으로 제한됩니다.
- 총기보관해제신청은 2015.10.19.까지 총기보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렵방법 등

- 수렵활동 시에는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함
-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 함

- 수렵견(엽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
- 민가 및 축사 주변에서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 포획승인절차,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제한확인표지 부착, 포획야생동물의 신고, 수렵장 총기안전수칙 등 수렵장설정자의 고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포획승인 취소 등

-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
-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 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렵 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 진 후 부터 해 뜨기까지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수렵인의 준수사항

-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렵관련 벌칙 규정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44조제1항 위반)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제50조제1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 (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제43조제2항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제8조 위반)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19조 제4항 위반)
 -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50조제2항 위반)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52조 위반)

-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건이 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를 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또는 낙하탄에 인한 피해 방지)
-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의 피해 예방)
- 수렵이 종료되면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관할경찰서의 조치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 입·출고 시 장전여부 등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음주상태로 총기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

수렵장 총기 안전 수칙

총기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기 바랍니다.

-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부담 해소
3. 주요내용
 - 조례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 조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간의 위탁계약의 계약조건을 정한 규정 삭제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녹색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670-807)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녹색환경과)

○ 전화 : 055-940-3505, 팩스 : 055-940-3759,

이메일: kimjm04@korea.kr

붙 임 : 1. 신구문 대비표 1부

2.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할 것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삭제) 등을 이행할 것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u>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u>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한 내용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관리계획 【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 열람 공고(안)

거창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거창군 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9. 21.

거 창 군 수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군계획도로

○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48	15	국 도로	200	중1-16	중2-13	일반 도로	-	-	
폐지	소로	2	124	8	국 도로	199	중2-13	중1-16	일반 도로	-	경고465호 (’92.12.24)	
기정	소로	2	127	8	국 도로	600	중로3-1	소3-32	일 반 도 로	-	경고465호 (’92.12.24)	
변경	소로	2	127	8	국 도로	215	중로3-1	소2-125	일 반 도 로	-	-	노선 축소
폐지	소로	3	33	6	국 도로	274	소3-55	소3-32	일 반 도 로	-	경고465호 (’92.12.24)	
폐지	소로	3	55	6	국 도로	140	중1-16	소2-127	일 반 도 로	-	경고465호 (’92.12.24)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2류 48호선	·노선 신설 ·위치 : 거창읍 상림리 산21-4일원 ·규모 : 폭원 - 15m / 연장 - 200m	·군계획시설(법원·검찰청)로의 원활한 진출입 도모를 위해 노선을 신설함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류 124호선	-	·노선 폐지 ·위치 : 거창읍 상림리 703-6일원 ·규모 : 폭원 - 8m / 연장 - 199m	·군계획시설(법원·검찰청) 결정에 따라 부지내 저촉되는 노선을 폐지함
소로2류 127호선	소로2류 127호선	·노선 축소 ·위치 : 거창읍 상림리 697-4일원 ·규모 : 폭원 - 8m 연장 - 600m → 215m 감) 385m	·군계획시설(법원·검찰청) 결정에 따라 부지내 저촉되는 노선을 제척하고자 노선을 축소함
소로3류 33호선	-	·노선 폐지 ·위치 : 거창읍 상림리 산25-7일원 ·규모 : 폭원 - 6m / 연장 - 274m	·군계획시설(법원·검찰청) 결정에 따라 부지내 저촉되는 노선을 폐지함
소로3류 55호선	-	·노선 폐지 ·위치 : 거창읍 상림리 412-4일원 ·규모 : 폭원 - 6m / 연장 - 140m	·군계획시설(법원·검찰청) 결정에 따라 부지내 저촉되는 노선을 폐지함

② 공공청사

○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7	공공청사	법원 검찰청	거창읍 상림리 산21-4일원	-	45,780	45,780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	공공청사	·신설 ·위치 : 거창읍 상림리 산21-4일원 ·면적 : 45,780m ²	·거창군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 고자 법조관련 공공기관이 통합된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군계획시설 (검찰지청·법원지원)을 결정하고자 함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

(☎055-940-3593, FAX 055-940-3579)

4. 의견 제출방법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번호:50132 /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2. 폐지이유

- 기초연금법(‘14.5.20.제정)에 의거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과 별도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 정비사업으로 권고한 사항임.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4항에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유사여부를 검토한 결과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4. 입법예고 기간 : 2015. 9. 21. ~ 2015. 10. 11.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055-940-3122, fax 940-3089 또는 이메일 sd1025@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담당 【☎(055)940-312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

2. 폐지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사회보험과 관련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사업군으로 분류한 중앙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4. 입법예고 기간 : 2015. 9. 21. ~ 2015. 10. 11.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055-940-3122, fax 940-3089 또는 이메일 sd1025@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담당 【☎(055)940-312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공고 제2015-828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계획(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5년 9월 21일

거창군수

1. 사업 목적 : 농지조성(전작물 재배)
2. 사업지구명 : 응곡지구
3.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산97번지
4. 사업시행면적 : 지적면적 32,231㎡
신청면적 2,400㎡
5. 사업개요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확대)
6. 총사업비 : 20,000천원
7. 사업기간 : 2015. 09. 21 ~ 2016. 09. 20(12개월)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297mm×42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과 지원분야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보조사업의 지출 근거를 마련을 위하여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운영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거창군 농업보조금 지원조례』로 변경
 -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 『거창군 농업보조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과 지원분야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보조사업의 지출 근거를 마련
 - 제4조(보조사업) ⇒ 제4조(계획의수립)
제4조의2(보조사업의 지원분야 및 지원방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 우편번호 50147] 에게 서면이나 메일 (suny0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담당 ☎(055)940-8123】 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9.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과 지원분야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보조사업의 지출 근거를 마련을 위하여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운영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거창군 농업보조금 지원조례』로 변경
-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 『거창군 농업보조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과 지원분야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보조사업의 지출 근거를 마련
- 제4조(보조사업) ⇒ 제4조(계획의수립)
제4조의2(보조사업의 지원분야 및 지원방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별첨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 (2) 규제심사 :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 . ~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개정 : 거창군 농업보조금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거창군 농업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조사업의 지원분야 및 지원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분야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2.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지원
3.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4.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6.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7. 산지 브랜드 및 경영체 지원
8.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9. 제4조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농업보조금 <u>운영</u> 조례	거창군 농업보조금 <u>지원</u>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u>운영</u>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u>거창군 농업</u> 보조금의 <u>지원</u>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다.</p>	<p>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p>	<p>제4조의2(보조사업의 지원분야 및 지원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분야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1.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p>
<p>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p>	
<p>3. 지구온난화 대비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p>	
<p>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p>	
<p>5.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p>	
<p>6.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p>	
<p>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p>	
<p>8. 수출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p>	

<p>9.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농정시책사업</p>	<p>성 향상 지원</p> <p>2.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지원</p> <p>3.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p> <p>4.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p> <p>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p> <p>6.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p> <p>7. 산지 브랜드 및 경영체 지원</p> <p>8.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p> <p>9. 제4조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p> <p>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1과 같다.</p>
--	---

[별표 1]

보조사업의 지원분야(제4조의2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선진 축산·내수면 소 득개발 및 생산성 향 상 지원	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 사업
	축산물 위생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 사업
쌀 관세화 극복을 위 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친환경·고품질·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농자재 지원 사업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원예농산물 FTA경쟁 력 강화 및 지속가능 한 농업 지원	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유망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 사업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지역적용 및 특화가능한 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농업 6차산업 활성 화 지원	지역대표 먹거리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각종 광고, 행사, 가격할인, 장비·포장재 지원 사업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메뉴, 브랜드, 컨설팅, 마케팅, 위생용품지원, 행사 지원 사업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지원 사업(농촌민박,

	<p>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p> <p>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운영, 보험가입, 교육, 노후체험시설,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p> <p>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p> <p>시설, 장비, 가공비, 포장재 등 농산물 가공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p>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	<p>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p> <p>수련회, 연찬회, 워크숍, 교육, 중앙 및 도대회 참가 등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 지원 사업</p> <p>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연구회 육성)지원 사업</p> <p>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p>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p>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행사,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p> <p>수출 촉진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p> <p>농산물 수출 물류비, 포장재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p> <p>수출농가, 업체 등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사업</p>
산지 브랜드 및 경영체 지원	<p>농산물 공동규격출하에 따른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p> <p>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시설, 장비 등 지원 사업</p> <p>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 및 포장재, 마케팅 지원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p> <p>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p>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p>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p> <p>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6.22.] [법률 제13356호, 2015.6.22., 일부개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1.11.22., 2013.3.23.>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2013.8.13., 2014.3.18.>

1.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 (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 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 구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어촌 관광, 농어촌 체험, 농어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

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수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축산업

[시행 2015.2.3.] [법률 제13145호, 2015.2.3., 일부개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 2015.5.4.] [법률 제13184호, 2015.2.3., 일부개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2.] [법률 제11877호, 2013.6.12., 일부개정]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737호, 2014.6.3., 타법개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34호, 2015.2.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10.7.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3.11.] [법률 제12412호, 2014.3.11., 타법개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3.8.13.>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용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진흥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50호, 2013.8.13., 전부개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 2015.7.20.] [법률 제13408호, 2015.7.20.,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시행 2008.3.22.] [법률 제8758호, 2007.12.21., 제정]

제5조 (경비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753호, 2014.6.11., 타법개정]

제110조(자금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4.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
5.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
6.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수행기관
7. 제80조, 제89조 및 제99조에 따른 농수산물 검사 및 검정 기관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조 목적)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등을 위한 농정시책사업에 군비보조금을 투입하여 보조사업 수행

나. 추계의 결과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 비용(a - b)	6,228	6,228	6,228	6,228	6,228	31,140	
세출	군비	6,228	6,228	6,228	6,228	6,228	31,140
	소계(a)	6,228	6,228	6,228	6,228	6,228	31,140
세입	0						
	소계(b)						

3. 관련 의견 : 거창군 자체예산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2015년 예산서 참조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